

# 2020년 국민신문고 청구감사 조사 결과

## 1. 감사배경

- 2020년 6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○○○ 지원사업 지원심의 관련 민원이 접수됨.
- 이에, 신고내용에 따른 ○○○ 지원사업의 심의 진행이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올바른 심사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, 지원심의 공고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함.

## 2. 중점 사항

- 2차 심의대상자들의 ‘기발표 작품(□□□)’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여부.
- ☒☒☒의 경우, 2차 심의에서 1차 선발자 16명에 1/2인 8명이 아니고, 굳이 7명만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 여부.
-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이 ☒☒☒장르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분야의 분들이 저마다의 독견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.

## 3. 감사결과 개요

- 2차 심의에서 ‘기발표 작품(□□□)’ 조건을 모두 충족성 여부
  - 2차 심의 전 사무처(사업부서)에서는 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 전수 검토를 하였으며 행정결격 사유 등 검토결과를 토대로 2차 심의회에 상정함.
  - ☒☒☒의 경우 16명 신청자가 제출한 ‘기발표 작품’ 내역이 해당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였으나, 신청자 2명이 제AAA한 ‘기발표 작품’ 중 ●●● 및 ●●●에 게재된 작품이라고 출처를 제AAA하였으나 사전검증과정에서 확인이 없었으나 심의회에 상정, 논의 후 지원결정에서 탈락.
  - 반면 최종 선정자(7명)과 그 외 신청자들은 ‘기발표 작품’ 기준에 충족됨이 확인됨.
  - ‘●●● 및 ●●●에 게재된 작품’도 기발표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‘□□□료를 받은 작품(□□□)’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 2차 심의에서도 ●●●, ●●●에 게재된 □□□임을 심의 전 전수조사를 하여 실제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, □□□료 수급 여부는 검토대상이 아니었

음.

- 그러나 ㄱㄱㄱ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·유도 하고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‘□□ □□ □□ 등을 받고’ 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지 민원인께서 판단하AAA는 제한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문구가 제한적인 의미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.

#### □ 2차 심의에서 8명이 아닌 7명을 선정한 배경

- 동 지원사업 설명자료 및 공고문에는 ‘2차 심의대상자 (선정)은 최종 지원 대상자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 예정’ 이라고 공지되어 있으며,
- 한국문화 □ □ □ 원회 『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(지침)』의 심의운영 기본방침에 명AAA된 ‘한 사업이 여러분야 또는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야별 예산배분은 전년도 선정결과 및 금년도 수요를 토대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’ 에도 위배되지 아니함.

#### □ ㄱㄱㄱ분야가 아닌 심의위원 구성 및 지원심의 부적정

- 1차, 2차 심의위원 중 ㄱㄱㄱ분야 위원은 총 3명이며 해당 심의위원 이력과 프로필 등을 확인한 결과 ㄱㄱㄱ분야의 전문가로 상당히 볼 수 있으며 ㄱㄱㄱ분야 이외 심의위원들로 비록 ㄱㄱㄱ분야가 주 전공이 아니더라도 ●●●의 전문가들로 본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으로서 자격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없음

### 4. 조치계획

#### □ 최종 선정자의 제출된 증빙자료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등 처리

- 심의 전 대상자들의 제출자료를 조사·확인을 하였으나, 사업계획 및 안내문에 공고된 바와 같이 선정자의 증빙자료를 재확인하여 허위 또는 거짓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

#### □ 기발표 작품(□□□) 인정기준 등 사업내용 재검토 [권고]

- 제한요건 등이 과도한 규제 또는 진입장벽으로 판단될 수 있음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

#### □ 사업부서장 공고문 등 관리 소홀로 ‘주의’ 처분 [주의]

- 감사결과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으나, 지원공고문 등이 부실하게 게AAA되는 등 관리 소홀히 담당부서장 ‘주의’ 처분 예정

---

# 2020년 ○○○ 지원사업 감사청구 조사결과

---

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2020.6.8. 국민신문고를 통해 ‘○○○ 지원사업’에 대한 감사 청구 민원(접수번호 2020-020 /접수일 : 2020.6.8.)이 접수되었다.
- 감사청구에 따라 해당사업의 심의진행이 적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올바른 심사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 확인하고자 실AAA하였다.

## 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2020년도 ○○○ 지원사업
- 감사범위
  -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
  - 심의자료(‘기발표 작품(□□□)’ 등)의 제출 및 검증, 결격사유 등 확인 여부

## 3. 감사인원 및 기간

- 감사인원 : 감사실장 JJJ, 감사관 KKK 2명
- 감사기간 : 2020. 6. 15. ~ 6. 19.

## 4. 감사중점사항

-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
  - 2차 심의대상자들의 ‘기발표 작품(□□□)’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
  - ☒☒☒의 경우, 2차 심의에서 1차 선발자 16명에 1/2인 8명이 아니고, 굳이 7명 만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
  -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이 ☒☒☒장르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분야의 분들이 저마다의 독견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

## 5. 감사 결과

### □ 사업개요

○ ○○○사업(이하 지원사업)의 목적은 ‘▽▽▽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 및 작품집 발간 등 창작활동에 대한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▽▽▽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기여’하기 위한 것이며, 동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가에게는 집필 활동 및 작품집 발간 등 창작활동을 위한 ㉠ ㉠㉠이 재원인 창작지원금 1,000만원(1인당)을 지원한다.

○ 2020년도 지원사업은 2019. 12. 2. 공모를 AAA작하여 2019. 12. 20.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지원신청 접수건수는 총 1,174건으로 1차 심의는 2020. 3. 9.~3. 13. 진행하였고 2020. 3. 31. 163건 선정결과를 발표하였고, 2차 심의는 2020. 5. 6.~5. 8. 심의를 통해 2020. 6. 3. 최종 지원결정대상자 80명을 발표하였다.

[표] 2020년도 ○○○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심의결과

(단위 : 건, %)

구분	AAA	MMM	BBB		NNN	CCC	DDD	ZZZ ZZ	EEE	FFF	합계
신청건수	510	69	136	91	96	49	93	100	9	21	1,174
1차 선정결과	57	7	22	15	15	9	16	16	2	4	163
2차 선정결과 (최종결과)	28	3	11	8	8	4	7	7	2	2	80

### □ 조사결과

가. 2차 심의에서 ‘기발표 작품(□□□)’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의문

○ 동 지원사업 2차 심의 필수 제출서류는 ① 미발표 □□□(작품), ② 기발표 □□□(작품), ③ 지원신청서 3종이며, 2차 심의에서 모든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였다.

○ 2020년도 지원사업에서는 2019년과 달리 일부 신청사항 등 변경이 있으며, ‘기발표 작품’에 대한 인정기준이 2019년에는 ‘●●●●·▲▲▲·◆◆◆ 등의 지면에 발표된 □□

□로, 미발표 신작 □□□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작품집으로 엮어 발간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고, 과거에 발간되었던 작품집에 수록되었던 작품은 불가능하다'고 하였으나,

○ 2020년에는 ㉔공통적으로 작품의 발표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㉕기존 발표한 작품집에 포함된 작품과 ㉖지원신청 전까지 발간 또는 발표된 작품으로 하였으며, 추가적으로 ㉗●●●, ●●● □□□료 등을 받고 게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'기발표 작품(□□□)'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.

- 다만, 지원신청 전까지 발간(발표) 예정 작품 및 동호회, 동인지 발표,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발표 등의 작품(□□□)은 '기발표 작품'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.

표] ○○○ 지원사업 공모 내용

<p>③ 2020년도 ㉑㉒ 지원신청 <b>기발표 작품(□□□)</b></p>	<p>국가문화예술포럼AAA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작품(□□□)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, 제출 단계에서 '첨부파일' 면에 첨부          ※ 파일명 : 2020년 ○○○_기발표 작품_신청자 본명(필명)          ※ 지원신청서, 미발표 작품(□□□)와 별도 파일로 제출          ※ 기발표 작품의 발표연도는 제한두지 않음          ※ 기발표 작품은 기존 발표한 작품집에 포함된 작품도 제출가능함          ※ 기발표 작품은 지원신청 전까지 발간 또는 발표된 작품이어야 하여, 예정인 작품은 해당되지 않음          ※ 기발표 작품은 ●●●, ●●● □□□료 등을 받고 게재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        ※ 동호회, 동인지 발표,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발표 등은 기발표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
--	---

○ 위와 같이 '기발표 작품' 기준에 따라 2차 심의 대상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지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확인을 하였는지 등 감사한 결과, 심의 전 사업부서(□□□부)에서는 심의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전수 검토하였으며, 결격사유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2차 심의회의에 상정하였다.

○ □□□의 경우 16명 신청자가 제출한 '기발표 작품' 총 80편(1인당 5편)은 해당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였으나, 신청자 2명은 '●●● 및 ●●●에 게재된 작품'이라고 출처를 제AAA하였으나 사업부서의 검토에서는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2차 심의회의에 상정

하여 논의 후 지원결정에서 탈락되었다. 반면 최종 선정자(7명)과 그 외 신청자들이 제출한 ‘기발표 작품’은 기준에 충족됨이 확인되었다.

- 민원인의 경우에도 ‘기작품 발표’ 5편 중 출처(☹☹☹)를 명기한 4편 이외 1편‘■’는 출처 명기가 안 되어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조사, 확인하여 ‘2018년 단행본’인 것을 확인하는 등 제AAA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였다.

○ 그러나, 사업공고에 제AAA된 기준은 ‘●●●, ●●● □□□료 등을 받고 게재한 경우’에 기발표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‘●●●, ●●●에 게재한 경우’와 ‘□□□료 등을 받고 제AAA한 경우’는 매우 다른 제한조건으로 이에 대해 사업부서장 ▲▲▲은 “2019년의 경우 ●●●, ▲▲▲, ◆◆◆ 등 지면에 발표된 □□□ 등을 ‘기발표 □□□’로 하였는데, 제출된 □□□들이 개인블로그 등에 올린 □□□가 제출되는 다수의 사례 등으로 본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에 제AAA된 ‘▽▽▽적 역량과 발전가능성’, ‘집필 작품의 ▽▽▽적 수준’ 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”이 있어, 2020년에는 “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‘기발표 작품’ 기준을 작품발표 연도에 구애를 두지 않고 기존 발표한 작품집과 지원신청 전까지의 발간 또는 발표된 작품으로 하였고 ▽▽▽계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‘●●● 및 ●●●에 게재된 작품’도 기발표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‘□□□료를 받은 작품(□□□)’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 2차 심의에서도 ●●●, ●●●에 게재된 □□□임을 심의 전 전수조사를 하여 실제 여부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□□□료 수급 여부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.

○ 한편으로 최근 ▽▽▽계 현장에서는 ‘창작활동에 대한 공정보상’, ‘창작자들의 창작권 보장’ 등에 대한 ▽▽▽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, 유도하고자 하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‘□□□료 등을 받고’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지 민원인께서 판단하는 제한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문구가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다.

○ 한편 본 지원사업은 지원결정자가 선정되어도 사업설명 등에 사전 공지된 ‘기발표 □□□의 출전과 관련하여 추후 증빙자료 요청’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 전 신청자들이 제출한 ‘기발표 작품’ 등 자료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 할 예정으로 증빙자료 불성실 및 선정자 사업포기 등을 위하여 세부분야별 예비합격자 19명(☒☒☒분야는 2명)을 선정해 두었다.

#### 나. 2차 심의에서 7명만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

○ 동 지원사업 설명자료 및 공고문에는 ‘2차 심의대상자 (선정)은 최종 지원대상자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 예정’이라고 공지되어 있으며,

○ 10개 분야로 각각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1차,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장르별 심의결과 다득점 순위, 분야별 예산 배분안, 전년도 선정결과 및 금년도 지원수요 등을 반영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, □□□ 『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(지침)』의 심의운영 기본방침에 명시된 ‘한 사업이 여러 분야 또는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야별 예산배분은 전년도 선정결과 및 금년도 수요를 토대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.

○ 최근 3년 간 전체 신청건수와 ☒☒☒분야 신청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☒☒☒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차 심의 당시 앞의 설명과 같이 다득점 순위, 신청수요 및 장르별 예산배분 등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장르별 지원결정 건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『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(지침)』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논의 후 결정하였다.

[표] 최근 3년간 ○○○ 지원사업 신청건수 현황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
전체 신청건수(A)	1,661	1,440	1,174
☒☒☒분야 신청건수(B)	237	113	100
비중(A/B)	14.27	7.85	8.52

다. ☒☒☒분야가 아닌 심의위원 구성 및 지원심의 부적정

○ ○○○의 모든 지원사업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『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(이하 운영규정)』, 『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(지침)』 등에 따라 심의위원 풀(Pool) 1,352명(2020년 기준)을 구성하고 『운영규정』 제5조(심의위원회 구성)에 따라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.

[표] ○○○ 심의·전문가 대상자격

- | 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문화예술의 창작(연기,연주,스태프 포함), 비평, 연구, 기획, 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</li> <li>2. 문화일반, 복지, 지역문화, 국제교류, 문화정책, 예술경영, 행정, 언론, 기타 지원심의를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</li> <li>3.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</li> </ol> <p>* (참고) ○○○ 심의·전문가 신청 페이지 →</p> |
|--|

○ 동 지원사업 1차, 2차 지원심의도 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 풀(Pool)에서 ●●●의 세부장르별로 구분하여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2배수를 추출하고, 사무처(담당부서)와 ○○○ ●●● 비상임위원이 2차적으로 지원사업에 적합한 심의위원 순위를 결정하면 순위결정에 따라 섭외 후 확정하였다.

○ 1차, 2차 심의위원 중 ☒☒☒분야 위원은 총 3명(GGG, HHH, III)으로, 1차 심의(☒☒☒)에서는 심의위원 3명 중 2명이며, 2차 심의(☒☒☒, EEE, FFF 통합)에서는 4명 중 1명이 심의를 하였으며, ○○○ 심의위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심의위원의 이력(프로필)을 확인한 결과 ☒☒☒로 등단을 하거나, 한국☒☒☒☒☒☒ 장관, √]√ 등을

역임하는 등 □□□분야 전문가로 상당히 볼 수 있으며 □□□분야 이외 심의위원들도 □□□이 주 전공분야는 아니더라도 ●●●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으로서 자격 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없다.

○ 한편 심의위원은 전체 신청사업의 심의자료를 심의 회의 전, 약 한달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의회의에 참석을 하며 사전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위원 간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거친 후에 심의위원별 개별채점을 진행하며 개별점수가 합산된 총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결정자를 선정 및 확정하는 방식으로 심의위원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.

## 6. 감사결과 문제점

### □ 지원공고문 등 부정확한 문구 및 설명 등 부적정

○ ‘기발표 작품’ 인정조건에 대한 지원공고문 등 설명자료가 부실,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지원신청자들에게 오독·오해 등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신청자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신청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
○ 다른 한편, ▽▽▽계의 관행화된 문제(□□□료 미지급, 저작권 미보장 등)를 개선하고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유도하고자 한 측면은 이해되나 ‘행정’은 명확성, 합리성 등에 기초해야 하며 ‘기발표 작품’ 조건이 오히려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어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.

○ 이에 2020년도 ○○○ 지원사업에서 제시된 여러 ‘요구기준’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특히 사업 공고문 등을 작성, 공표 할 때는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준 및 제한요건 등을 수요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.

## 7. 향후 처리계획 등

### □ 최종 선정자에 대한 증빙자료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등 처리

○ 2차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결과, 해당 제한조건에 대한 사전 전수검토가 이루어졌고, '□□□료 지급 여부'를 떠나 모든 ○○○, ●●●에 게재된 작품(□□□)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심의회의에서 논의, 반영되는 등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.

○ ■■■부는 사업계획 및 공고문에 따라 최종 선정자들이 제출한 여러 증빙자료를 다시 검증·확인을 통해 거짓·허위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부당 지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,

### □ '기발표 작품(□□□)' 인정기준 등 사업내용 재검토 [권고]

○ ▽▽▽계의 현실 및 사업취지·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나, 그 과정에서 제한요건 등이 당초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 또는 진입장벽으로 작동 될 수 있으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

### □ 관련부서장에게 '주의' 처분 조치 [주의]

○ 사업공고문 등 사전에 이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사업부서장에게는 '주의' 처분 조치

- 끝 -